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25.1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다. 벤처투자 가능한 핀테크 분야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회사 및 인가’ 기준으로 정비

라.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한도 상향(안 제7조제2항)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10 → 20% 상향

마. 모태펀드 탈퇴 시 투자금·수익 회수 근거 마련(안 제44조제5항·제6항·제7항)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마련(’25.12,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연장 결정 시점에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벤처투자 관리·감독 업무 위임(안 제48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해·청산 업무, 「벤처투자법」 제7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조합 등의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

사.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 이관(안 제48조제3항·제6항·제7항)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

아. 조문 정비(안 제35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46조제1항·제2항, 별표1)

-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확대(특정 기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에 따라, 특정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삭제
- 2)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20%)를 폐지함에 따라, 세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
- 3) M&A펀드 투자의무(60%) 산정 방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 - 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